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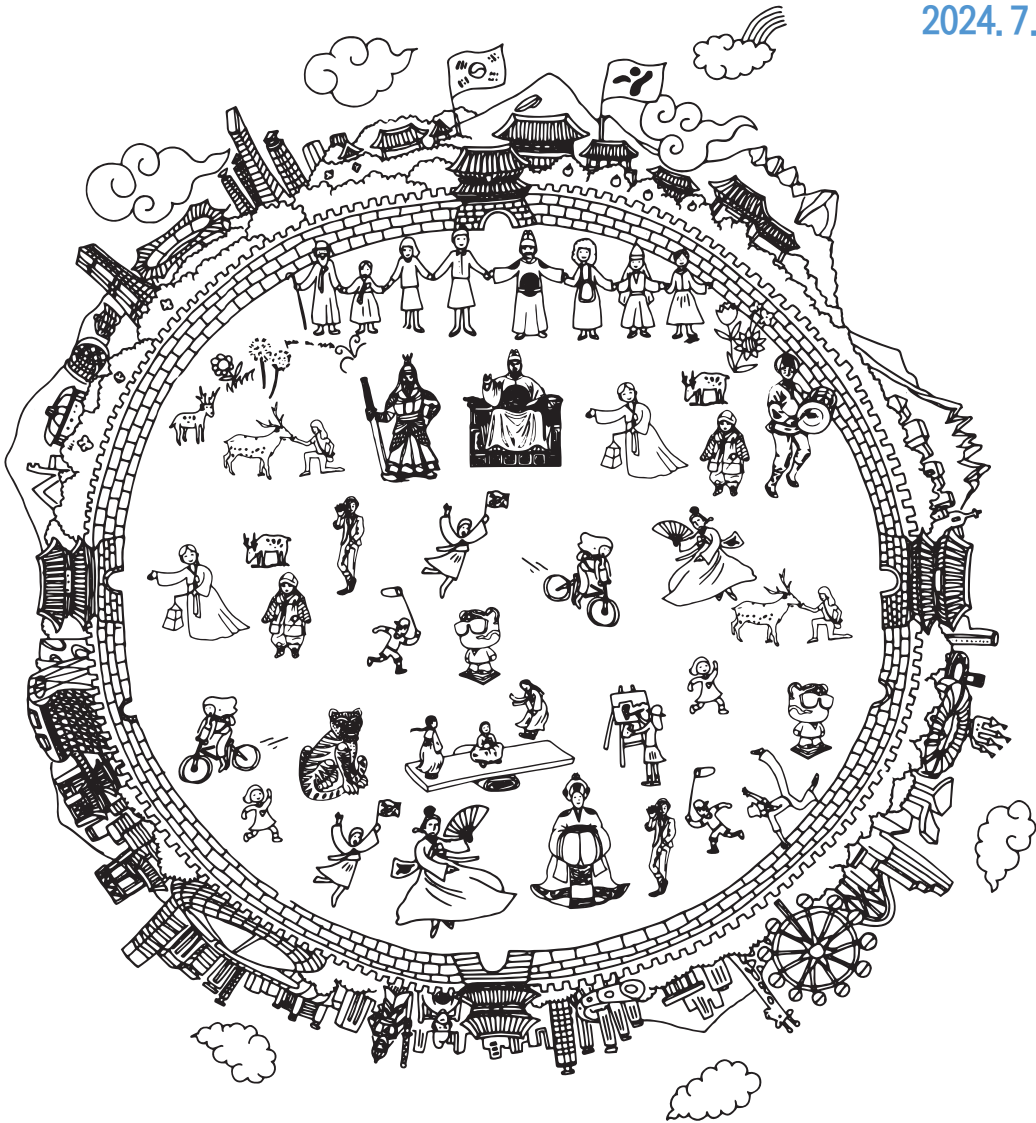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92호
2024. 7. 15.(월)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9302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3
제9303호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9304호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9305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9306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9307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제9308호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14
제9309호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15
제9310호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제9311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제9312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제9313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제9314호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9315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9316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제9317호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9318호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31
제9319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제9320호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7
제9321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43
제9322호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54
제9323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1
제9324호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63
제9325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제9326호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제9327호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8
제9328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70

제932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71
제9330호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72
제9331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74
제9332호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제9333호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제9334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7
제9335호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8
제9336호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0
제9337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81
제9338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83
제9339호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85
제9340호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7
제9341호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88
제9342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4
제9343호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95
제9344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8
제9345호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0
제9346호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1
제9347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제9348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7
제9349호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108
제9350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11
제935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	112
제9352호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81
제9353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5
제9354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7
제9355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189
제9356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2
제9357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4
제9358호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97
제9359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

[훈 령]

제105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201
--------	--------------------------	-----

자치법규 등**[조 례]****◆ 서울특별시조례 제9302호****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1. 폐지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조례를 폐지할 것을 청구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303호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립하는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이 2024. 3. 26. 공포된바,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연도별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을 추가함(제4조제2항제3호의2)
- 나. 연도별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4조제2항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304호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숲길 지정관리 등) 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숲길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영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영 제11조의7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그 밖에 사항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는 곳곳에서 산을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산이 존재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이 등산객의 실족 방지를 위해 설치한 계단 등 등산로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일반 등산객들의 위험을 초래하고 환경 및 등산로를 훼손하는 행위이기에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숲길의 정의 신설(제2조제7호)

나. 숲길 지정관리,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제11조)

다. 숲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제12조)

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제1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305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 또는 생명윤리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7조의3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제24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반려동물을 기르던 사람이 그 반려동물의 죽음이나 실종 등으로 과도한 우울감이나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를 말한다)의 예방 및 완화 지원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시민의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의 예방 및 완화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법령 등에 비추어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을 조정하는 한편, 맹견출입금지 장소로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기능과 지원사항으로 반려동물 상실증후군의 예방·완화 지원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을 상위법령 등에 맞추어 조정함(제5조제2항제5호 및 제5호의2 신설)
- 나.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추가함(제7조의3제7호의2 신설)
- 다.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반려동물 상실증후군의 예방 및 완화지원을 추가함(제24조제2항제9호의2 신설)
- 라. 시장 및 구청장은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의 예방 및 완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25조제4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306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립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 ②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별표 ※ 비고(1) 중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 를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 태어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기존에 흙과 섞어 묻는 것만 허용하던 시립자연장지의 자연장 방법을 생분해성수지제품 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한 방법으로 확대하는 한편, 6개월 미만으로 사망한 영아의 경우 문언상 시민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연장의 방법으로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 이외에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용기는 상위법령에 따른 용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함(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 나.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 태어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시민으로 포함하도록 함(별표)

◆ 서울특별시조례 제9307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 휴양시설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6호 유희시설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3. 휴양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고
캠핑장	캠핑장	1면당(1박 기준)	13,000~25,000원	입장료는 징수할 수 없고, 그 밖의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징수한다.
	글램핑장	1면당(1박 기준)	80,000~120,000원	
	캠프시설	개소당(바비큐, 캠프파이어 등)	5,000~20,000원	
강변 물놀이장	어린이(6~12세) 청소년(13~18세) 성 인(19세 이상)		1,000~1,500원 1,500~3,000원 3,000~3,200원	
수영장	어린이(6~12세) 청소년(13~18세) 성 인(19세 이상)		2,700~3,800원 3,600~5,100원 4,500~6,400원	
숙박시설 (전망호텔)	1박(4인 이하 기준)		345,000~500,000원	극성수기(세계 불꽃 축제 등) 시 이용료는 100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6. 유희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고
자전거대여소	1시간 기준 · 1인승 · 2인승 · 다인승 · 전기동력 · 기타 추가요금(10분당) · 1인승 · 2인승 · 다인승 · 전기동력 · 기타	2,700~3,800원 5,400~7,600원 15,000~22,000원 8,000~11,000원 4,000~6,000원 500~700원 1,000~1,500원 2,500~3,500원 1,300~1,800원 1,000~1,500원	
레이싱경기장, MTB 경기장, 익스트림장	1회당(4시간 기준) · 단체독점사용	45,000~54,000원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한강 교량에 위치한 전망호텔 운영을 위하여 한강공원 휴양시설 이용료에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 한강공원 내 자전거 대여소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인승 및 전기동력 자전거 기준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별표 2 제3호 휴양시설 이용료에 숙박시설(전망호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나. 별표 2 제6호 중 자전거대여소 기준 및 이용료에 다인승 및 전기동력 자전거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308호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상 점검 주기와 보고 주기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점검 주기를 명시하여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점검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시장 등이 매년 교통안전 체험시설 상태를 점검하도록 개정(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309호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 서비스 유지 및 증진과 시민건강 및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 및 농업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식처 환경을 고려하여 화밀·화분을 제공하는 밀원식물을 육성하고,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는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① 시장은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식처를 보존 및 관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정원 등에 밀원식물을 보급하여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과수원,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적으로 식재하여 꿀벌 및 화분매개자 서식처를 조성 및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꿀벌 보호) 시장은 꿀벌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방제 및 퇴치기 보급
2. 화학농약과 살충제 제한 및 친환경 농약 사용 촉구
3. 그 밖에 꿀벌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유지관리 방안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꿀벌 생태계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2. 양봉산업 및 꿀벌 생태계 보호를 위한 위원회 구축
3.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보급 및 전문인력 관리체계 방안
4.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관리
5. 토착 밀원식물의 발굴 및 보급
6. 밀원식물 기반 도시공원 및 녹지 정책
7. 꿀벌의 생태계 보존 및 서식처 보호관리
8. 생태계 위기에 대응하는 양봉산업 및 꿀벌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3. 토종 밀원식물 도입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
4. 말벌 방제 및 퇴치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하여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연구지원 및 기술개발) 시장은 양봉산업 및 꿀벌 보호 관련 연구지원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 서비스 유지 및 증진과 시민건강 및 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꿀벌의 보호·관리 및 양봉산업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2조)

다. 밀원식물의 보급 및 서식처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라. 꿀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마. 양봉산업 육성·지원 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310호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29조의2”를 “법 제4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29조”를 “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9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4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단체”를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을 “(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편의시설을 조성”을 “편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조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설치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운영 시 의무 등) ①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 대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수상활동의 촉진 및 다양화 등을 위하여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 이 발표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의 중요성 또한 높아졌기에 수상레저 시설과 운영자 관련 사항을 이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운영자의 의무 관련 사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상위법 개정에 맞춰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근거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함(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 나. 수상레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탁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8조제2항 신설)
- 다. 수상레저시설 운영 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9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311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마일리지 부여”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상에게 마일리지”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
2. 공공자전거 대여소 간 자전거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자
3. 그 밖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④ 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자전거 쏠림현상 발생하고 있으나 배송인력 충원을 통한 인위적 재배치는 운영수지 관점에서 배송인력 무한정 확대 불가, 업무 효율에도 한계가 존재함.
- 재배치 문제해결은 부분적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식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과다·과소 대여소에서 따릉이 대여·반납 시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시민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지속성을 담보하는 제도화가 필요함.

2. 주요내용

- 가.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5조제3항)
- 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상을 규정함(제15조제3항)
- 다. 시장이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5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312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6.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행 안전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및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대책 마련 조항을 시장의 책무로 신설하고, 계획 수립 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정차 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또한, 안전교육으로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위반 근절에 관한 조항 신설을 통해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교육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로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 신설(제3조제5항)
- 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 수립 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방법 및 주·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규정 (제4조제1항제5호)
- 다. 안전교육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위반 근절 사항 규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313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시장은 구청장이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총선 이후 폐현수막이 급격히 늘었지만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행안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지자체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지원을 발표하는 등 정부부처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서울수도 자치구가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청장이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314호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최적관람석의 관리)”를 “(최적관람석의 관리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관람권 판매 시 최적관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또는 유선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각종 콘서트 등 문화공연 개최 시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휠체어석 등 장애인석의 경우 실제로는 별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서울시가 직영·위탁 운영하는 체육·문화 시설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휠체어석 등 장애인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구매 또는 유선구매가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가 관람권 판매 시에 최적관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구매 또는 유선구매가 가능하도록 함(제4조의2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315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화문광장”이란 종로구 세종로 1-68번지 일대 광장 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내 설치된 부대시설물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국가적 행사 등 공익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2년 8월 재개장에 의해 규모와 형태 등이 변경된 광화문광장의 장소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 광화문광장의 국가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국가적·국민적 요구에 따른 긴급한 사용신청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연한 운영을 도모하고 광화문 광장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광화문광장의 변경된 형태 등을 반영하여 장소 정의를 재규정함(제2조제1호)
- 나. 공익목적의 국가행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 (제5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316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산출, 발행 및 지원계획,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대중교통 요금을 원가 수준, 적자 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요금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기 및 무제한 이용권의 경우, 관련 조례 규정이 전무하여 시장이 자의적으로 이용권 가격을 정할 수 있음.
- 실제로, 올해 서울시가 내놓은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적정 가격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음.
- 또한 ‘돌려쓰기’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채 정책이 시행되었고, 현재도 뚜렷한 예방 및 단속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연차별 대중교통 시행계획에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산출, 발행 및 지원계획,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정기·무제한 이용권에 관한 최소한의 관리·통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연차별 대중교통 시행계획에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산출, 발행 및 지원계획,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317호**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을”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과 「청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을”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청년의 책무) ① 청년참여기구의 청년은 시정참여를 통하여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기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시정참여를 위하여 청년참여기구의 청년은 상호 존중하며, 안전한 활동 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청년참여기구와 청년자율예산에 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중전의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년자율예산의 편성과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해 규정된 법령과 회계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한 노력
2.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및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
3.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4.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0조(중전의 제9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청년참여기구는 성별이 다른 2명의 위원장(이하 “공동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공동운영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를 “총회”로, “정한다”를 “정하며, 총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된 예산편성안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의는”을 “총회는”으로, “온라인 정책패널과 시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을 “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① 청년참여기구는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회의”를 “총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동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집하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정넷은”을 “청년참여기구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참여기구 위원 및 위원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통산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청년기본법」의 제·개정에 따른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와 더불어,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하는 청년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하여 책임있는 청년참여와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도모함
- 청년자율예산 운영상의 회계원칙과 예산편성 절차 등을 확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의 시정참여 범위로 ‘정책결정과정’을 추가 규정하여 실질적인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도모함 (제1조)
- 나. 청년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청년의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청년의 책무’를 신설함 (제4조의2 신설)
- 다. 청년참여기구 및 청년자율예산에 대하여 다른 조례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함 (제5조 신설)
- 라. ‘예산·회계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청년자율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제6조)
- 마.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제8조제2항)
- 바. 다양한 청년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위원 및 위원장의 연임기준을 마련함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
- 사. 시장예산편성권, 의회 예산안 심의권 등 회계원칙 확립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총회관련 규정을 정비함 (제12조)
- 아. 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동운영위원장의 협의를 통한 공동의견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13조제2항)
- 자. 조례상 용어를 정비함 (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318호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권리 강화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조합원의 데이터를 말한다.
2. “데이터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 중 조합원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3. “조합원”이란 데이터협동조합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협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데이터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 ①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데이터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데이터 사용 목적

나.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범위

다. 데이터 보관 기간

라. 데이터 제공 및 공유 대상

마.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 내역을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정기적으로 데이터 사용 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조합원에게 제공

나. 데이터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다. 데이터 사용 관련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공지 및 조치

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 및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및 보안 기술, 데이터 활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및 데이터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데이터협동조합 이해 증진

2.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데이터 관련 법률, 기술, 시장 동향 등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

3.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활용의 이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전문가포럼 및 워크숍 개최

제8조(홍보)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데이터협동조합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3. 그 밖에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빅데이터 사회의 도래와 함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작은 데이터가 모인 큰 정보가 중요해진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고 함께 활용하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조합원의 보건의료, 교육, 교통, 소비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데이터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데이터의 정의를 규정하고, 인용한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2조제1호 및 제2호)
- 나. 데이터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 다. 데이터 보안에 대한 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를 규정함(제5조)
 - 데이터 사용에 대한 동의절차 및 사용내역 공개의 세부기준을 신설함(제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 신설)
 - 조합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토록 함(제5조제3항)
- 라. 시장이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마. 시장이 데이터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8조)
- 바. 시장이 데이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319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중전의 제5호) 중 “시설폐소”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폐소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으로, “주거공간”을 “주택”으로 한다.

2. “지역사회 자립지원”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폐소하여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지원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4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제5조의 제목 “(계획의 수립)”을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으로 한다.

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거주시설 폐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폐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제5장의 제목 “지역사회 전환”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할 경우, 자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2. 지원주택 운영 지원
3.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
4.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5. 자립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6. 지역사회 자립지원과 관련한 조사, 연구, 교육 등
7. 그 밖에 지역사회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주민조례청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었음. 이에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자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에서 나오는 물리적 의미의 ‘탈시설’ 용어 대신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용어로 대체 사용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 자립지원에 대한 근거를 유지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조례명 또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주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2호·제5호 및 제6호 신설)
- 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신설함.(제4조제4호 신설)
- 라. 지역사회 정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신설함.(제5조의2 신설)
- 마.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신설함.(제15조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320호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녀고용평등 실현, 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 모·부성 및 돌봄보장, 여가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개인생활 등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한 서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전반의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
3.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4.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5.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가족친화 제도 도입·확대 등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 조성 및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고용정책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양성평등고용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양성평등고용정책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고용정책 의식확산을 위한 홍보
2. 양성평등고용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3. 양성평등고용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
4. 양성평등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사항
 - 가.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사항
 - 나. 성별임금격차 및 고용상 성차별 예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 라.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 마.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
 - 바. 가족친화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사.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아.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자.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지원 및 양성평등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제6조(양성평등고용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양성평등고용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성평등고용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고용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서울시,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 평가지표 반영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
4. 일·생활 균형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고용정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고용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여성·고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의 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양성평등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일·생활 균형 및 지원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고용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⑦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세부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차별조사관) ① 시장은 양성평등 고용 및 고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차별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용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법인 및 단체에서 여성정책 또는 고용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관계법, 성평등 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 ④ 조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조사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직업능력 개발) 시장과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5조(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이하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지원
 2.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기업 컨설팅
 3.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구축
 5.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이하 “직장맘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직장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2. 직장 내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3.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사업
 4.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직장맘지원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직장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와 직장맘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8조(실태조사 실시) ① 시장은 서울시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실태조사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일·생활 균형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취득에 관한 컨설팅, 교육 지원 사업
5.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업,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설치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각각 제6조에 따른 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일·생활 균형위원회 설치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각각 제6조에 따른 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존속기한) 서울특별시 양성평등고용정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기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와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로 이관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함.
- 나. 양성평등 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다. 양성평등노동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라.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마.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321 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주류화(性主流化)”란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정 전반에서 양성평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

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
4.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사항
 - 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 나. 돌봄 분담과 일·생활 균형 기반 구축
 - 다. 정치, 사회참여 성별격차 해소
 - 라. 양성평등 문화 확산
 - 마. 여성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 바.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 사. 성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아.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자치구청장·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치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6. 여성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4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8.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 사람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제1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②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전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⑦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젠더자문관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시정 전반에 성인지 강화 및 성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젠더자문관을 둔다.
- ②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정책 발굴 및 자문
 2. 주요사업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자문 및 협의(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포함한다)
 3. 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4. 주요사업 추진부서 직원 성인지 교육 실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③ 젠더자문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1절 양성평등정책 추진

- 제15조(성주류화 조치) ① 시장은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성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 제16조(성별영향평가) ① 「성별영향평가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다.
- 제17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8조(성인지 통계)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 제19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위탁기관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한다.

③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시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치구,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을 말한다)의 주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22조(적극적 조치) 시장·시 소속기관(「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를 말한다)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노동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성평등 확립
3. 임신·출산 및 수유 중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5. 기간제노동여성 및 단시간노동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26조(일·생활 균형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생활 균형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직장맘지원센터 지원 확충 및 활성화
9. 그 밖에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5.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제28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직, 직접 고용된 지원인력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여성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32조(양성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가족·1인 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양성평등 교육) ① 시장은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 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시장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① 시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고,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양성평등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 1회 서울여성가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36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양성평등추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8조(여성친화도시) 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국제협력) ①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連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양성평등 가족 기금

제40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양성평등 실현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제4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 및 가족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2. 제45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3. 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2. 위원회 위원
3.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기금운용심의회는 운영과 관련하여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기금운용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⑦ 기금의 자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⑧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제43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성평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시민사회 활동가를 위한 성평등·성인지 교육 실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3. 성평등활동가의 성장 및 단체 설립·운영 지원
4. 그 밖에 성평등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시민사회·기업과의 협력과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제40조에 따른 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7조(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양성평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모범으로 하고 있으며, 단일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은 물론 ‘남녀고용평등’과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을 함께 담고 있어 그 구성이 방대하고 복잡함. 이에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기본 조례에 충실한 조례로 재정비하기 위함임.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타조례로 이관하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일·생활균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함.
- 나. 각 조항에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함.
- 다.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일·생활균형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관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322호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안전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 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조사 등을 이유로 입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2) 감봉·정직·강등 등의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직무 미부여,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 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 구성원(서울특별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에게 적용되며, 시와 소속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자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이 조례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피해를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구성원 누구나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신상 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6조(상급자 및 구성원의 책무) ①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과 직위에서 피해자의 업무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와 구성원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창구)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접수 처리를 위해 고충상담창구를 시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설치한다.

②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③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창구와 사이버신고창구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이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등 결과 통지 및 공개)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등에게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건 처리결과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결과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

직, 직접 고용된 지원 인력 등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시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등(이하 “당사자”라 한다)과 친족(친족이었던 자 포함)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경우

② 사건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제19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4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제16조(신청의 각하) ① 심의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의 내용이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청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4. 신청이 제기될 당시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5.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

6.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신청의 기각) ①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조사한 결과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권고 및 후속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2차 가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피해자 등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감봉, 정직, 강등 등의 징계,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② 피해가 발생한 해당기관의 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등의 노동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자 등의 치료와 보호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며,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④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나 심의위원회 위원 등 사건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해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 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시장인 경우에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리고 고충에 대한 조사와 심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21조(예방교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재발방지조치 등)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내용을 포함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각각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1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존속기한)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은 피해자의 직장생활을 비롯한 삶 전체를 극심하게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예방 및 재발 방지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조직에 복귀하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 등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현재 규칙(「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및 소속기관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현행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및 소속기관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이 조례로 이관하여 통합 규정하는 등 필요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근절함으로써 안전하고 성평등한 근무환경 및 모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제3조)
- 다.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 신고 및 사실 확인 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라. 상급자 및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함(제6조)
- 마.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창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 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조사결과 통지 및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 사.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부터 제19조까지)
- 아. 행위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제20조)
- 자. 예방교육 및 재발방지조치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함(제21조 및 제2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323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필요한 조치를 할” 을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지원
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조사, 연구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가 최근 공개한 2023년도 대중교통 현황에 따르면, 전년대비 지하철(8.93%), 시내버스(4.68%) 등의 이용률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대중교통 이용객이 6.12% 늘었지만, 마을버스만 2.39% 줄어든 81만 3천명 수준으로 후퇴함.
- 이러한 승객 감소는 마을버스 업체의 운영난과 인력난으로 연결되면서 마을버스 운행 중단과 배차간격의 증가, 교통사고 등의 문제를 가져와 시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이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고충을 해소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제9조 제1항)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지원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대상 상담 및 조사 연구
- 나. 시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서울특별시조례 제9324호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조류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3.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충돌 방지 대책)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소유자·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류 이동경로 등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경우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공공건축물 심의·자문 시 인공구조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자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해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인공구조물에 의한 조류충돌 피해 저감을 위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자치구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야생조류 충돌 방지 방안을 위한 목적을 규정함(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2조)
- 다.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실시 및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라. 인공구조물 사고발생 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마.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325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5조를 제11조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6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9조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10조를 제5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사회복지중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중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시장은 모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중전의 제9조) 제1항제5호 중 “안전과 인권보호를”을 “안전보장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4. 1.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2024. 7. 3. 시행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모범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 등에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고 그에 따른 사기증진 및 예우를 하고 일부 조문순서를 정비하여 조례형식(체제)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센터를 신설함.(제10조 신설)
- 나. 모범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한 표창규정을 신설함.(제12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326호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시행(2024. 5. 19.)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조항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야생조류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조례로 지정하기 위해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을 규정함(제20조 제2항)

나. 야생조류에 관한 세부 규정을 삭제함(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삭제)

◆ **서울특별시조례 제9327호**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과적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2. 치매환자 실종예방 지원
3. 초로기 치매환자 사회활동 지원
4.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앓는 질환으로 조기에 검진하여 예방하고 꾸준히 진료하면 질환의 진행속도나 증상을 늦출 수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가 치매의 예방과 관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 나. 시장은 효과적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5조)
- 다. 시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328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원” 을 “편성 성격 및 항목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표창) 시장은 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는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그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협의회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아울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협의회의 회원에게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고 그에 따른 사기증진 및 예우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구체화 함(제4조제2항)
- 나. 공유재산의 우선임대 규정을 신설함(제4조의2 신설)
- 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회원의 표창규정을 신설함(제6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32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 검직허가 시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에 대한 검직허가 현황을 서울특별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공무원 검직이 문제가 되어 일부 부처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 논란이 예상되는 검직 신청을 면밀히 심사하기로 하는 등 중립성 확보가 필요한 공무원 검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되는 상황임
-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검직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하고, 공무원 검직허가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서울시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 검직 허가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규정함(제29조제3항의 신설)
- 나. 공무원 검직허가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29조제4항의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330호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반려견 순찰대”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소정의 선발 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반려견 순찰대 활동) ①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2. 지역 내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신고
3. 기타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신고

②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반려견 순찰대 연계사업)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약자 정서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
3. 범죄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대원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시장이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경찰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2022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된 ‘반려견 순찰대’ 시범사업은 반려견 산책 활동에 지역 방법 순찰 활동을 접목한 주민참여형 치안정책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의 효과를 인정받아 2023년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되고 있음
- 이에 주민참여형 치안 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서울시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반려견 순찰대 활동과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5조까지)
- 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331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의장은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 검직허가 시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에 대한 검직허가 현황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공무원 검직이 문제가 되어 일부 부처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 논란이 예상되는 검직 신청을 면밀히 심사하기로 하는 등 중립성 확보가 필요한 공무원 검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되는 상황임
-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검직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하고, 공무원 검직허가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서울시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의회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 검직 허가 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규정함(제35조제3항의 신설)
- 나. 서울시의회 공무원 검직허가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35조제4항의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332호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4”를 “5”로 하고, “고용하여야 한다.”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적”을 “실적 및 계획”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일자리 수(2074만 9천개)는 1년 전보다 29만 3천개 늘어난 반면, 20대 이하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같은 기간 9만 7천개 감소한 312만 6천개를 기록하면서 전 연령대 통틀어 가장 많이 줄어듀었음
- 특히 청년 일자리의 질도 보건사회복지(10만 7천개), 숙박·음식(3만 9천개), 운수·창고(3만 8천개) 등의 택배·배달 라이더 등의 일자리 분야는 늘어난 반면, 공공 분야(1만 3천개 감소) 등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감소하고, 비경제활동 인구 또한, 1년전 대비 3만 8천명(10.8%) 증가한 38만 6천명을 기록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이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은 청년구직자의 5%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청년 채용계획과 실적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 실행력을 높여 청년고용을 선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은 청년구직자의 5%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제4조제1항)
- 나. 투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 실적 및 계획을 의장에 제출하도록 해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함(제4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333호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선 지출된 도시재생기금 원금 전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장기미확보 정비기반시설의 조기 조성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및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재원구조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현행 조례에 따라 정비사업에 따른 현금기부채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기반 시설의 경우 도시재생기금을 선 투자 하여 조성하고 사업 종료 후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현금기부채납을 도시재생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장기간 사업이 정채된 정비기반시설을 조기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세출 대상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기반시설에 선 지출된 도시재생기금 원금 전출을 신설함(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334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화재·풍수해예방 점검 및 환경개선사업, 화재보험 가입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전통시장은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작은 불이라도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서울시는 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화재공제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뿐 아니라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사업의 범위에 화재·풍수해예방 점검 및 환경개선사업, 화재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가함(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335호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서울특별시청년상

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청년상의 수상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나목 중 “청년 및 청소년지도분야”를 “청소년지도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서울특별시청년상 : 청년의 날(9월 세 번째 토요일)

별표 1 중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및청소년상	94	3	19	72
-------------------	----	---	----	----

별표 1의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란 다음에 서울특별시청년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청년상	20	1	3	16
----------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청년 발전 및 권익증진에 공헌한 청년에게 포상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년기본법」 제2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 문제 해결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시민상 수상대상자에 청년을 추가함(제2조제1항제6호 및 안 제3조제3항 신설)
- 나. 서울특별시시민상 시상 종류, 방법 및 시기에 서울특별시청년상을 신설함(제4조제1항제6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336호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시장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북한이탈주민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인식 제고를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337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치되는” 을 “서울특별시 소속” 으로, “관한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시” 를 “시 소속”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 및” 을 “서울특별시장,” 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하여 시와” 를 “따라 시,” 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건” 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장” 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촉 할” 을 “위촉할”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을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한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때 「청년기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10분의 3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1.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2. 외교·국방·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
3.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성격·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제10조제3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9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회의개최”를 “회의 개최”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달성하는데”를 “달성하는 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장여부”를 “연장 여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 위촉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청년기본법」 개정('23. 9. 22. 시행)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청년 의무 위촉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약칭등 일부 조문의 수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기본법령에 따라 위원회 설치·운영 시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의 비율을 1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10분의 3 이상으로 하며, 청년정책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적용을 제외함(제8조제5항 및 제6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338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둘 수 있다” 를 “둔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송협회의 위원장은 시의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된다.

제11조제5항(중전의 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협회의 위원장은 시의 재난안전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변인이 되며,” 를 “재난방송협의회” 로 한다.

1. 당연직은 시의 실·본부·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 소재 방송사업자
 -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 소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 라.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장이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재난 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에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추가 (제6조)
- 나.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장 직급 상향 및 당연직 위원에 대한 규정 추가(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339호**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관련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① 시장은 시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종사자에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법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8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통계)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이에 시장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며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나.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다.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라.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마.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 사.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340호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 자치구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상대로 한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인해 남녀노소 모든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주요 대상 및 동기가 불특정해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발생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경찰청, 자치구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부서 간 정보교류 협력 등 협력체계 조항을 신설하여, 정보교류와 협력 등에 대한 실질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등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함 (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341 호**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중심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중심지역”이란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역세권”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

- 1)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 2)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간선도로변”이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신혼부부안심주택(이하 “신혼부부주택”이라 한다)”이란 시장,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중심지역에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가.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 중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

3. “기본용적률”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의 합리적인 계획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용적률을 말한다.

4. “상한용적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제4호에 따른 기본용적률과 합산한 범위에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가. 시장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나. 시장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장에게 공급하는 경우

5. "공공기여율"이란 기본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부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제안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가 순부담으로 공공시설등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비율을 말하고, 공공기여 내용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6. "촉진지구"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하고, 그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신혼부부주택의 건설·지원 및 매입예산 확보,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등 신혼부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정 등

제4조(사업시행자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혼부부주택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② 사업시행자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대상지) ① 신혼부부주택 사업대상지(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는 대중교통 중심지역에 위치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주거지역 중 시장이 정하는 지역
2. 준공업지역
3.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② 사업대상지가 대중교통 중심지역 내외에 걸치는 경우 사업대상지의 과반이 대중교통 중심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의 정형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사업대상지 규모 변경에 대한 사항은 제2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때 경미한 변경의 범위는 최초 인허가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④ 사업대상지의 노후건축물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대상지 내 기존 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대상지의 구역경계는 가구·획지단위 및 주요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 공원 등)의 경

계로서 정형화를 원칙으로 하고, 진입도로나 단지 내 도로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유형) 신희부부주택의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제출)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촉진 지구 지정 대상에서 신희부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제안 및 지구계획 승인신청서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대상지 기준 350미터 범위 내 주야간 주·정차 및 교통현황
4. 그 밖에 신희부부주택의 건설·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신희부부주택 사업계획 수립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③ 시장은 신희부부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공공기여율, 건축계획 등 사업계획의 수립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장은 신희부부주택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의 결정절차)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등 중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등 중 공공주택사업자 이외의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이하 "촉진지구지정등"이라 한다)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관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제2항의 촉진지구지정등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구청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등은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결정된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1. 촉진지구지정등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2.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② 사업시행자는 제6조의 사업유형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벌칙규정에 따른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흥부부주택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신흥부부주택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취소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장 신흥부부주택 건설을 위한 규제완화 등

제11조(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립기준에 적합할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제12조(도시·군관리계획 규제 완화) ① 시장은 신흥부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신흥부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신흥부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비주거용도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에서 신흥부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40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에서 정한 산업부지 확보비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사업지원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신흥부부주택 사업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대중교통 중심지역 사업(예정)대상지에 대한 신흥부부주택 사업의 총괄지원
 2. 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
 3. 토지주의 사업 대행 및 사업성 분석
 4. 공공기여에 따른 토지, 주택, 기여금 관리의 사무위임
 5.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투자유치, 자금 등 지원
 6. 신흥부부주택 사업의 영향 및 파급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활성화 사업추진 등

7. 임차인의 모집·선정 및 명도·퇴거 지원
8. 임대료·관리비의 부과·징수, 주거비지원 등의 업무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4장 신혼부부주택의 공급 등

제14조(신혼부부주택의 건설·공급) 신혼부부주택 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 건설 규모 및 비율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신혼부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무기간, 양도, 최초 임대료, 임대료 상승률,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 관련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임대료 책정 및 나눔카 도입 방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신혼부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신혼부부(입주 시까지 혼인이 예정된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대상자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할 수 있다.

② 소득·자산·차량소유 여부 등 입주자의 선정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신혼부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제5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8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신혼부부주택 건설 등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검토 및 심의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제출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 그 효력을 가진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2015년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초저출생 시대에서 저출생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중심지역으로 주거와 육아 등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인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공급하여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혼부부안심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등의 범위 및 면적 근거를 마련함(제2조)
- 나.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혼부부안심주택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의 범위 근거를 마련함(제7조)
- 다.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완화 및 공공·민간 임차인자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8조부터 제17조까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9342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시장은 자녀를 출생하거나 출생예정인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구에게 서울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1980년에 비해 약 73.4%나 급감하여 ‘저출생’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구들은 그간 축적한 자산 또는 소득이 중앙정부의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초과하여 정책사각지대로 내몰림에 따라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임.
- 따라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구에게 공공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자녀를 출생하거나 출생예정인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구에게 서울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8조제6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343호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변경된 사항을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 및 기자재 개발·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양성
 4. 스마트농업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5.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
 6.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7.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8.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
 9. 스마트농업 기술을 이용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 사업
 10. 스마트농업 기술을 이용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치유농업 사업
 11.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
 12.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 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 등) ① 시장은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정부·대학·연구소 등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연구 등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설비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스마트농업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3년 7월 25일 제정되어 오는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 예정임
-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책무로 정하도록 한 것 외에도 시·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토록 하는 등 지자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농업이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현실이나, 스마트농업법의 제정 목적이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해 농업의 자동화, 정밀화, 무인화 등을 촉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서울시의 농업 관련 산업 역량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률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 육성과 지속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나.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주요 내용과 공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지원 범위를 규정함(제5조)
- 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과 교육,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마. 스마트농업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344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종전의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제2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상담·정보 제공
8.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기업인 대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정부는 지난 2022년에 장애인의 창업과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개정하여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상담·정보 제공 사업,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한 바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이러한 법률 개정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서울시 차원의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상담·정보 제공 사업과 장애경제인의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 또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장애인기업인 대표’를 추가하여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상담·정보 제공 사업, 장애경제인 보조인력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제7조제1항제2호 및 제8호 신설)
- 나.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자격에 ‘장애인기업인 대표’를 추가함(제9조제3항제3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345호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개정함(제1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346호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활용하는”을 “활용(임차 및 매입)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건물)으로 제공 받고 그 부속토지는 공공이 임차하여”를 “활용하여”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민간토지매입형 : 민간의 토지를 공공이 매입하여 공공주택을 건설·운영

제8조제1항제1호 중 “공동출자형”을 “공동출자형, 민간토지매입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민간토지사용형”을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민간공공협력형”을 “용도지역 세분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그 부속토지는 공공이 임차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이와 관련한 부속토지 활용(임차) 범위 등 세부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를 “60퍼센트 이상 우선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지 주변 여건 등에 따라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매입기준) ① 시장은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의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협의요청사항 중 사업방식에 “[] 민간토지매입”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별첨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여 기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제7조에 따른 협상회의를 진행한 경우 제 11조 개정 규정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제안서

(제 1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법인 및 대표자 성명)	토지사용자가 권리 위임 시 위임장 첨부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토지 현황	위치			
	면적	㎡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해당시 기재
	공시지가			
	소유권 확보 관련 사항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관련사항 등 해당시 기재		
협의 요청 사항	대상지 특성	주변 여건, 건물 등 기타 특이사항 있는 경우 기재		
	사업방식	☐ 민간토지사용 ☐ 공동출자 ☐ 민간토지매입 ☐ 민간공공협력		
	사업계획	도시계획 규제완화, 토지사용 협약(임대차계약) 등 협의 요청(제안)사항 있는 경우 기재		
	사업종료 및 청산	예시) 건물매입 또는 토지매각 (운영기준의 사업종료 및 청산 참고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의 본인 정보를 서울특별시에 제공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관련 법령, 조례 및 운영기준을 확인하고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별첨서류

- 1. 토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2. 위임장(해당 시)

유의사항

- 1)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한다.
- 2) 신청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 3)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 2 쪽)

☐ 사업계획(안) ※ 제안계획 있는 경우 작성

구 분	내 용	비 고
용 도 지 역 변 경	00지역 → 00지역	
용 적 륜	기준 : 000% 이하 상한 : 000% 이하	
도 시 계 획 시 설 해 제 · 복 합 화		
기 타 규 제 (계 획) 완 화	예시) 건축물의 최고높이 완화 등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규제(계획) 완화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공 공 기 여 비 율	계획 : 00% 이상 기준 : 00%	산출 근거 기입,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계획(안) 있는 경우 별도 작성 가능
사 업 계 획 개 요		

☐ 기타 검토 ※ 검토사항 있는 경우 작성

구 분	기타 검토사항
상위 및 관련계획	내용
사업필요성	내용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의 사업구조 다양화 및 공공기여기준 조정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간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공이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토지매입형을 신설하고, 기존 민간공공협력형에서 임차를 제외하여 사업방식을 단순화함(제2호)
- 나. 공공기여 기준을 당초 사업유형에서 용도지역 변경 내용으로 조정함(제11조)
- 다. 민간 토지 및 건축물을 시장이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347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의” 를 “지역대장, 전문대장, 부장의” 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대장, 전문대장은” 을 “지역대장, 전문대장, 부장은”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부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시행일을 최초 임명일로 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전국의 약 10만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는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1915년 8월부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해 옴
- 의용소방대의 간부 임기를 살펴보면, 대장·부대장의 임기가 있는 반면 부장의 임기가 없음
- 이에 조직 내 형평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장의 임기를 정해야함

2. 주요내용

- 가. 부장의 임기를 추가함(제7조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348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해외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립 및 운영) 재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 문화·관광의 중심도시로, 코로나19 이후 대외적인 관광수요가 종전 수준을 넘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를 넘어 해외 현지에서의 서울 관광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서울관광재단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실제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은 베이징, 타이페이 등에 해외지사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하와이관광청, 로스앤젤레스관광청 등 해외 도시 역시 타국에 지사를 운영하면서 자국 관광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관광 유치를 통한 서울시 위상을 지속해서 높이기 위해 해외지사 또는 사무소 설립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함.

2. 주요내용

- 가. 재단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3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349호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풍납토성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과 함께 인근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납토성”이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다.
2.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이란 법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보존·관리 구역 내 지역주민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주민의 거주·생활환경의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이주대책”이란 풍납토성 보존 및 발굴을 위해 이주로 생활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주거 대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납토성을 통해 관광 활성화 등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지원 사업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풍납토성 지역주민의 지원사업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풍납토성 인근지역 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 등에 관련 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가유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 등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도시개발·부동산·건설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이나 지역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임기·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6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풍납토성 인근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관한 사항
2.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3.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관광 개발 및 관광 활성화 사업
4.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
5.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국가유산 관련 민원 상담 사업
6.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전력·통신 시설에 대한 정비 및 지하화 사업
7. 보상이 완료된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국가유산 규제에 의한 재산권 침해, 거주환경 악화 등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건축행위 허용기준 수립) 시장은 국가유산 보존과 주민 상생을 위해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송파구청 및 국가유산청에 협조한다.

제8조(이주대책 등) ① 시장은 풍납토성 보존 및 발굴을 위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이주대책 마련 시에는 토지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이주대상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송파구 풍납토성 인근 지역은 문화유산 보존을 이유로 유례없는 건축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재건축·재개발 중단에 이어 노후화된 주거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환경 개선 공사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임.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서울시에 풍납토성보존·관리 사업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책은 부재함.
- 이번 조례안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풍납토성 미래가치 창출과 함께 인근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됨.

2. 주요내용

- 가.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사업과 이주대책에 대해 정의함(제2조)
- 나. 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로 풍납토성 인근 주민 지원 사업과 이주대책에 관한 종합시책 수립·시행을 명시하고, 필요할 경우 예산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제3조)
- 다. 풍납동 인근 지역 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5조)
- 라. 풍납토성 인근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관광 개발 및 활성화, 정주 환경 개선, 보상 완료된 부지 및 건물 활용에 따른 지역 활성화 등과 관련된 주민지원사업 근거 조항을 신설함(제6조)
- 마. 생활터전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대상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350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구청장이 관리·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 추가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35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계획·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② 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획 체계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제3조(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에게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 및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이하 “시도시기본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은 시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 ⑤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성·계층·인종·지역 간 평등의 원칙 아래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⑦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5조(생활권계획의 수립·관리) ①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 단위로 상세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생활권은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1개 이상 동(洞) 규모의 지역생활권과 1개 이상의 자치구 규모인 권역생활권으로 구분한다.
- 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지역생활권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역생활권계획안은 시도시기본계획 및 권역생활권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생활권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중심지 육성방안, 생활서비스시설(생활SOC) 확충방안, 연차별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구청장에게 실행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생활권계획 수립, 운영 및 실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6조(제안서의 처리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
 2. 계획설명서(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환경성 검토결과, 교통성 검토결과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3. 인구·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5.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지정의 적합성 여부
 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7. 도시생태의 훼손가능성 여부 및 생태면적률 계획의 적정성 여부
 8.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서에 대하여 제안한

주민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청취 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시의 공보나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나. 시를 포함하여 입안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입안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의견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알릴 가능

가.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

나. 도시관리계획 입안·변경 대상지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

다. 20미터 이하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반대편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때에는 그 내용이 영 제25조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5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장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지정

제8조(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지정) 시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지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또는 변경결정할 수 있다.

제9조(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세분)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화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국가유산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주요 자연경관의 조망 확보 또는 가로공간의 개방감 등 조망축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수변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국가중요시설물보호지구: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5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조성계획)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50 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1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시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제15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결정 등) ①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10조 및 제67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행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시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제10조 및 제67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제16조(매수불가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①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

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6장 지구단위계획

제17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준공업지역 내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5.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7. 민자역사를 개발하려는 지역
8. 공공성 있는 전략개발을 실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공동주택(아파트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경우, 그 규모 등이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예정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④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①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지정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에 자문하려는 때에는 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및 개략적인 구역의 지정구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시장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경우 각 위원회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법 제51조와 영 제43조 및 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2.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3. 공공임대산업시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 관련시설 또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권장업종과 관련된 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4. 공공임대상가(「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3조제2호에 의한 상가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5. 공공임대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전략산업을 육성·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제21조(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사용 및 납부 등) ①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중 법 제52조의2제5항 전단에서 정하는 비용을 장기미집행 시설의 설치에 우선 사용
2. 제1호에 따른 비용 이외의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시설등의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 사용 가능
 - 가. 용도지구 중 고도지구, 경관지구, 취락지구
 - 나.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저층주거지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나 시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3.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제1호 및 제2호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대상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 가능
4.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제공하는 것 및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비용 납부(이하 "공공기여"라 한다)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할 것
5. 도시공간본부장은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중에 상임위원회에 보고 할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함

②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은 제21조를 적

용한다.

③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납부액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 가능
2.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 등 이전에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 및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할 것

제23조(반환금의 관리 등)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 한정한다.

②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얻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일부 반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반환된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용도제한
2.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3.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4. 그 밖에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중 시민에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 ①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토지가치를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70퍼센트를 말한다.

제26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1회

제7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2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게가 30톤 이하, 부피가 3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가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3.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채무게 30톤 이하, 전체부피 3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공익상 적정 여부
2. 이해관계인의 보호 여부
3. 주변의 환경·경관·교통 및 미관 등의 훼손 여부
4.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및 보존 여부
5. 조경 및 재해예방 등의 조치 필요 여부
6.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확보 여부 등

② 시장은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대상토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허가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는 해당 개발행위가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구청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제29조(이행보증금 등) ①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가 제외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등으로 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3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영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1조(기반시설의 부담 등) 기반시설 용량의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하는 기반시설연동제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 및 영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개발행위허가 제한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와 동시에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에게 의견청취 관련 사항에 관하여 우편(전자우편 포함)을 발송하거나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

제8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절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제2절 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4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와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다만,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으로 등록받아 건축하는 한국전통호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나.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다.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라. 화약류 저장소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차장

나. 주유소와 함께 설치하는 자동세차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높이는 3층 이하,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이 호 다목에 한정하며, 이하 "시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목의 비율 이하로 건폐율 완화 가능

가.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40퍼센트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50퍼센트

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50퍼센트

2. 자연경관지구 안의 토지로서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완화 가능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규모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44조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에서 달리 규정 가능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나.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토지로서 2층(8미터) 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하여 건축하는 경우(다만, 경사지붕으로 조성할 때의 지붕 높이와 층

고 1.8미터 이하 다락의 층수는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재생위원회(이 호의 라목에 한정함)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 16미터 이하로 완화 가능

가. 인접지역과의 높이 차이가 현저하여 높이 제한의 실효성이 없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도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고 인접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

나.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재생위원회(이 호의 나목에 한정함)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 20미터 이하로 완화 가능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중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

3.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 규모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4층 이하, 1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층수·높이를 달리 규정 가능

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식수(植樹) 등의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이하 “건축 조례”라 한다) 제24조제4항 각 호의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 및 차고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교정시설 및 갯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갯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8층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6조(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제35조제1항 각 호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이하 “경관 조례”라 한다)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층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7조(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제35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8층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8조(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형태, 배치, 색채 및 조경 등은 수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7층 이상인 건축물은 양호한 수변경관의 보호 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형태, 배치, 색채 및 조경 등에 대하여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서 6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해당 허가권자가 산지, 구릉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변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국가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7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①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

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과 집회장 중 회의장·공회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하는 투자사업인 공연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인 경우의 공연장과 공연장 중 바닥면적 2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음악당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도매시장
 - 나. 소매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내 위락시설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주차장
 - 나. 주유소와 함께 설치한 자동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다만,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와 항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 ③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제42조(그 밖의 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영 제80조 및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방화지구
2. 개발진흥지구
3. 문화지구

제43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때
2.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때
3.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때
4. 보행자의 편의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한 경우 또는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제3절 건폐율 및 용적률

제4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6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6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6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6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제45조(그 밖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 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가. 공원시설: 20퍼센트

나.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 60퍼센트

3.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 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60퍼센트

②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학교(유치원은 제외한 다)로서 학교 전체가 이전한 부지(이하 "학교이적지"라 한다)는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4조를 적용한다.

1.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하는 학교이적지가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되는 경우

3. 개발이 완료된 학교이적지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같은 법 시행령 제 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 비상용승강기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다만, 추가 설치된 부분의 면적에 한정한다)

제46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 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4조 및 제45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까지 낮 출 수 있다.

제47조(건폐율의 완화) ① 제4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규정 가능

2.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20퍼센트 이하

3. 법 제77조제4항제2호 및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 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정자연유산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4.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5.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임

6.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

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7.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② 제4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울도심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소단위 및 보전 정비형의 건폐율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84조제1항의 범위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규정 가능

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의 건폐율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 다만, 제51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전통시장은 구청장이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건폐율은 각 목 이하로 할 것

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70퍼센트

나. 제3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다. 상업지역: 80퍼센트. 다만,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9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법 제7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1천퍼센트(단, 서울도심: 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단, 서울도심: 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단, 서울도심: 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단, 서울도심: 5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2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2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50퍼센트

제49조(그 밖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3항 및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서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법 제51조와 영 제43조 및 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규정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법 제52조 및 제78조제7항과 영 제46조 규정
2. 제4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퍼센트 이하 (제48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에 한한다.)
- ③ 학교이적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는 제48조를 적용한다.

가. 상업지역: 500퍼센트

나. 준주거지역: 320퍼센트

다.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120퍼센트

마. 제2종일반주거지역: 160퍼센트

바.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제50조(용적률의 강화) 제4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제48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 안에서 별표 8 제1호가목, 별표 9 제1호나목, 별표 10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별표 16의 용적률을 적용할 것

2.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목의 이하로 할 것

가.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 250퍼센트.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시설등 제공 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0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나.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또는 별표 17에 따른 산업지원시설인 기숙사 및 오피스텔의 용적률: 400퍼센트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인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각종 계획에 의하여 기숙사를 건축할 경우의 용적률: 400퍼센트(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이외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라.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 안에서 별표 12 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복합건물(별표 17 제3호에 따른 산업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8의 용적률 적용

제51조(용적률의 완화) ① 제4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4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다음 각 목을 따를 것. 다만,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무기간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임대운영할 계획으로 건축하는 임대주

택은 가목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임대무기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제48조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나. 임대무기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제48조에 따른 용적률의 15퍼센트

다. 임대무기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제48조에 따른 용적률의 10퍼센트

2.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가능

3.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4. 영 제85조제8항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α 는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가. $(1+1.3\alpha) \times$ 제48조 규정에 따른 용적률(다만,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제48조제3호는 180퍼센트 이하, 제48조제4호는 2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1+1.3\alpha) \times$ 제49조제3항 규정에 따른 용적률

다. $(1+1.3\alpha) \times$ 제50조 규정에 따른 용적률

5.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함

6.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 범위에서 영 제42조의3제2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추가 건축 가능.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제48조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나.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②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적률을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완화 가능

가.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100퍼센트 이하

나. 제48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에서 국·공유지에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이하의 범위

다. 제48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서울도심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제48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 다만, 관광숙박 특화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제48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서울도심 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1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라.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환기구·배전함 등(이하 "지하철출입구등"이라 한다)을 건물 또는 대지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설치하

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른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이하의 범위

- 1) 지하철출입구등을 대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의 산식에 따라 용적률 완화 가능

가) 대지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times$ (지하철출입구등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나) 건물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times$ (지하철출입구등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

- 2) 지하철출입구등의 연결을 위한 통로를 설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용적률 완화 가능. 이때, 통로의 설치비용 등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제21조를 따른다.

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100퍼센트 이하(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과 초과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의 용적률을 합한 전체 용적률이 영 제85조제1항의 용적률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용적률 이하)의 범위

바. 제48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48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 가능

-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 밖에 건설하는 기숙사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2)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 안의 기숙사

2.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국민임대주택, 제3호의 행복주택, 제3의2호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이나 제4호의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와 제4조제1호의 공공준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2)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를 건립하는 경우(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기숙사인 경우에 한정함)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

3. 준주거지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

4. 제48조제8호의 지역에서 서울도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800퍼센트 범위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

5.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내에서 제48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완화되는 용적률은 세부시설조성계획으로 고시하는 혁신성장시설을 설치 할 것

6. 제48조제3호부터 6호까지와 제5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은 4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은 450퍼센트 이하, 준공업 지역은 400퍼센트 이하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가능

8.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도시계획시설 대학 내 의료시설 포함)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는 경우(대학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으로 고시)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내에서 제48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가능. 다만, 이 경우 완화되는 용적률의 2분의 1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공공이 필요로 하는 의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절 기존 건축물의 특례

제52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5절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제53조(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 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9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

제54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5조(구성 및 운영)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4명 이상 5명 이하
 2. 시 공무원 4명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17명 이상 21명 이하
-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촉된 후 1년 이내에 재위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본다.
- ⑥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⑨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⑩ 시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맡고,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맡는다.
- ⑪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56조(분과위원회)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영 제1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

의·의결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57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6. 제5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감사원장 또는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7.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 ② 제1항제7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③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제59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해당 자치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시도시계획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입안권자에게 통보하고 입안권자는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회의의 비공개) 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 공개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1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2.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3. 제2호의 기간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료는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바로 공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2조(수당 등) 시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제54조, 제55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제56조제1항제6호부터 제5항까지,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은 시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른 권한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4조(도시공간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도시공간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운영 등을 위하여 도시공간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도시경관·도시설계·교통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가와 문화·미래·역사·관광 등 인문사회 관련분야 전문가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6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를 기획단으로 본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
 - 나.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위원회(이하 “시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
 - 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도시재생위원회
 -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공동위원회
 -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4.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자문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사무
- 제66조(기획단의 구성) 기획단에는 법 제116조에 따른 전문위원을 포함한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 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0장 보칙

- 제67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19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중 별표 19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6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5조제2항에 따른 학교이적지
 2. 별표 1 제1호라목(2)(마)에 따른 사고지(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3. 별표 1 제1호가목(4)에 따른 비오톱1등급 토지 <제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4.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울도심
 5.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건축선
- 제6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7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제49조제2항 및 별표 5제3호가목18)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변경 및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변경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51조제2항제3호와 별표 16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규정은 2025년 3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까지 적용한다.

제3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제1호 및 제49조제3항 단서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이전한 학교이적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4조(위원 해촉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2023. 7. 24. 이전에 위촉된 위원인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2023. 7. 24.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6조(아파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된 잠실지구, 반포지구, 화곡지구, 암사·명일지구 및 청담·도곡지구 안에서의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한다.

제7조(자연경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082호) 제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지구는 영 제31조제2항제1호가목에 의한 자연경관지구로 본다.

제8조(미관광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2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미관광장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광장 또는 경관광장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건축법」(2000. 1.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의한 도시설계 및 종전 「도시계획법」(2000. 1.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의한 상세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과 종전 「도시계획법」(2003. 1. 1.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또는 운영지침으로 정한 사항은 영 제25조제4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중 이 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변경절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시가지경관지구의 높이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① 종전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7441호) 시행(2020.1.9.) 당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은 2020. 1. 9.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한 건축물의 높이계획을 따른다.

② 종전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7441호) 시행일(2020.1.9.)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를 접수한 경우까지는 종전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7423호)를 적용한다.

제11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 제48조에 따른 공용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제40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각각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국가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으로 본다.

제12조(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8.7.30. 이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602호) 별표 4 규정의 비공업기능 우세지구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당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종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981호) 시행일(2015.7.30.) 이전에 산업부지 확보비율이 포함되어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는 종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92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376호) 시행 당시(2012.11.1.)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집단지설지구에서의 건폐율은 제45조제1항제2호가목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349호)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376호) 시행 당시(2012.11.1.)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지설지구에서의 용적률은 제49조제1항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349호)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에 따라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지구 안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그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한다.

④ 제47조제2항제1호 개정 규정에 의한 서울도심 중 종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242호)에 의한 4대문 안 이외의 상업지역은 제48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제30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 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을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 보전의 필요성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은 일필지 단위로 함. 다만,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가장 최근 고시한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상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의 30퍼센트(녹지지역에서는 20퍼센트) 미만인 토지 (나) 평균경사도 18도(녹지지역에서는 12도) 미만인 토지. 다만, 일필지 내에 격자(10m×10m)가 1개 이상일 경우(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 신고를 받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 (4) 제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 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오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나) 비오톱유형평가는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서식지기능, 생물서식의 잠재성, 식물의 층위구조, 면적 및 희귀도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대) 개별비오톱평가는 자연형 비오톱유형과 근자연형 비오톱유형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며 자연성, 생물서식지기능, 면적, 위치 등을 평가항목으로 고려한다.
나. 도시관리 계획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도시계획 사업	(1) 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영 제61조에 따라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 및 위해의 발생 등이 우려되는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 및 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있어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 야생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다) 개발행위로 인하여 위해·붕괴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라)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매)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경우 (3) 개발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마. 기반시설	해당 행위가 도로·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각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수도법」 제18조, 「하수도법」 제12조 및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인근도로와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 형태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마)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마. 기반시설	(2)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수도, 그 밖의 급수시설은 해당 행위지역의 규모·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 형태로 하고, 외력인 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이 얼지 아니하는 깊이 이상으로 이를 묻거나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하수도 등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해당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해당 행위지역 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며, 배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하천 그 밖의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해당 행위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 (라) 하수의 배출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거방식에 따르고, 자연환경을 심하게 파괴할 오수를 방출할 경우에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수압·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매) 구조물은 지하수의 부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축조하여야 한다. (사)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고, 관경은 2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아)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평균하수처리량으로 하고, 그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 도수관의 처리능력은 1일에 통과시킬 수 있는 최대하수량으로 한다.
바. 그 밖의 사항	(1)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에는 그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과 법 및 영 그리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다.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 2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간계획 대상 면적 중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생태면적률을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대상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 30퍼센트 이상, 그 이외 용도의 건축물 20퍼센트 이상 (나) 녹지지역 내 건축물 50퍼센트 이상 (다) (가) 와 (나)에도 불구하고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생태면적률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녹지지역 내 건축물 50퍼센트 이상 (나) 그 외 지역의 건축물 30퍼센트 이상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지반인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숫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다음의 안전조치를 할 것 (가)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나) 토사가 무너져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폐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다)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라)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옹벽은 토사의 붕괴 또는 침하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바)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다. 토석채취	(1)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2) 소음·진동 또는 분진 등에 의하여 인근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 한정하도록 할 것 (3)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

검토편야	허 가 기 준
	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9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녹지지역 안에서의 기존토지의 분할 ㉡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해당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병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가 합병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 분할 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를 합병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마.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해당 행위로 인하여 위해의 발생, 주변 환경의 오염 및 도시경관의 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해당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1) 물건적치로 인하여 소음, 악취 및 침출수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물건적치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도시미관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제1호 관련)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인 것(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미술관·기념관)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아동관련시설
 - 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제2호 관련)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미술관·기념관)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아동 관련시설
 - 나. 노인복지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제3호 관련)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종교집회장
 - 나. 사진관, 표구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일반음식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사. 독서실, 기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아.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박물관·미술관·기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봉안당은 유골 750구 이하에 한정한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의료법」 제3조3호에 따른 요양병원을 말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원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하며,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군부대시설(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시설에 한정한다)인 대지 안에 건축하는 경우
 - 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에 한정한다)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제4호 관련)

1. 영 별표 5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시공동위원회, 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시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시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대상 전통시장 : 15층 이하
 - 2) 균형발전사업지구·산업개발진흥지구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특정관리대상 아파트"라 한다): 10층 이하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평균층수 13층 이하
 - 나. 제1호 이외의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경관관리 또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시도시계획위원회, 시공동위원회, 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시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시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1호가목에 따른 "평균층수"는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를 말한다.
3.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에 해당하는 건축물
 - 1) 공연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2) 종교집회장
 - 3) 자동차영업소(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4) 서점
 - 5) 총포판매소(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6) 사진관, 표구점

- 7)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8)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9) 일반음식점
 - 10)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11)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12) 독서실, 기원
 - 13)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 14)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15) 다중생활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16)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 중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17) 노래연습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공연장·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는 제외하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 2)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소매시장 및 상점(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2)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야영장시설은 제외하며,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하역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 3)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4) 도료류 판매소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주차장
 - 2) 세차장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가) 너비 12미터(일반택시운송사업용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는 6미터, 마을버스운송사업용의 차고는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 나) 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 위치한 대지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작물재배사
 - 2) 종묘배양시설
 - 3)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4)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정한다)
4. 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 위치한 대지에 한해 제3호가목의 1), 7), 16), 17) 각각의 건축물 접도조건을 완화하여 건축하게 할 수 있다.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제5호 관련)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자동차영업소는 1천제곱미터 미만, 총포판매소는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공연장·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는 제외하며,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예식장을 제외한 용도의 건축물은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소매시장 및 상점(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야영장 시설은 제외하며,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너비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것으로 한정한다),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하역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주유소·석유 판매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
 - 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라. 도료류 판매소
-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1) 너비 12미터(일반택시운송사업용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는 6미터, 마을버스운송사업용의 차고는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 (2) 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 위치한 대지
-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작물재배사
 - 나. 종묘배양시설
 -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갇새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갇새·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정한다)

[별표 7]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3조제6호 관련)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철도시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및 집배송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제외한다)
 - 나.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다.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라.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마. 도시가스 제조시설
 - 바. 화학류 저장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정비공장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위한 시설
 - 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가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
 - 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8]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3조제7호 관련)

1.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 16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휴게소,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 영 별표 8 제1호의 다목과 라목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하 같다) 이내의 지역 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초과, 200미터까지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별표 9]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3조제8호 관련)

1.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 16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야영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금은세공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작물 재배사
 - 2) 종묘배양시설
 - 3)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4) 식물과 관련된 1)부터 3)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2. 영 별표 9 제1호의 가목 및 나목 규정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 별표 8 제2호에 따른다.

[별표 10]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3조제9호 관련)

1.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 16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금은세공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작물 재배사
 - 2) 종묘배양시설
 - 3)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4) 식물과 관련된 1)부터 3)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 영 별표 10 제1호의 나목 및 다목, 제2호마목 규정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 별표 8 제2호에 따른다.

[별표 11]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3조제10호 관련)

1.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폐차장(폐차영업소는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 영 별표 11 제1호마목 및 제2호자목 규정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 별표 8 제2호에 따른다.

[별표 12]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3조제11호 관련)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단,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구단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정비사업 또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은 별표 17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시설의 설치 또는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1의2. 제1호의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 7. 30. 현재 주택지 등으로 둘러싸여 산업부지의 활용이 어렵고, 주변과 연계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3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적지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의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3]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2호 관련)

보전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호 다목의 목욕장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호 라목의 산후조리원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작물재배사
 - 나. 종묘배양시설
 -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것

[별표 14]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3호 관련)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종교집회장
 - 나. 사진관, 표구점
 - 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라. 일반음식점
 - 마.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바.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사. 독서실, 기원
 - 아.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한정한다)
 - 나.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폐식장

[별표 15]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4호 관련)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 또는 시 또는 구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지식산업센터·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는 제외한다)
-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별표 16]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별표 8 제1호가목, 별표 9 제1호나목, 별표 10 제1호가목, 제50조제1호 관련)

1.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 비율

- 가.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은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의무 비율) 이상으로 한다. 이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의무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시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전체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1) 도사·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 2)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전통시장
 -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5) 시장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2.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은 제48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용적률 이하로 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 및 서울도심을 제외한 일반상업지역은 600퍼센트 이하, 서울도심 내의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용적률과 같은 비율의 주거용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을 포함한다)상의 중심지 육성방향에 부합하는 용도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시공동위원회 등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 2) 그 밖에 지역의 전략적 육성, 시 정책목적 달성 등을 위해 시도시계획위원회, 시공동위원회 등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라.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1호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 시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을 가목과 나목에서 정한 주거용 용적률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별표 17]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제33조제11호 별표 12 관련)

1. 공장의 범위

-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및 제20호 바목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자동차 정비공장
 다. 현재 공장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지목이 “공장용지”로서 나대지이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2. 산업부지 확보비율

- 가. 별표 12 제1호의 단서에서 정하는 산업부지 확보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업구역 내 공장비율이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구역내 공장비율(2008.1.31 기준)	사업구역 면적대비 산업 부지 확보비율	비 고
10~20% 미만	10% 이상	사업구역은 준공업지역만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20~30% 미만	20% 이상	
30~40% 미만	30% 이상	
40~50% 미만	40% 이상	
50% 이상	50% 이상	

- 나. 산업부지에 설치하는 산업시설의 용적률은 공동주택 부지의 용적률 이상으로 한다.
 다. 산업부지 중 공공시설로 제공 또는 시 또는 자치구가 매입하는 부지는 산업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제3호다목에 따른 산업시설 중 「의료법」 제3조의3의 종합병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1단계(10퍼센트)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의 범위

- 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0호의 산업시설
 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산업지원시설(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30이하에 한정한다). 단, 기숙사 및 오피스텔은 산업지원시설 바닥면적 합계의 3분의1 이하인 경우만 허용한다.
 다.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시설 또는 산업지원시설로 인정하는 경우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기숙사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로 대체할 수 있다.

4. 그 밖의 사항

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노후건축물 적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공공시설부지의 위치·용도·비율과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하여는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별표 18]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이적지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제33조제11호 별표 12 관련)

1. 준공업지역 내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 적용방법

- 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에 따라서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차등 적용한다.
- 나. 사업구역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부터 1만제곱미터까지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면적을 2만제곱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다.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은 별표 17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전체 바닥면적 대비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	용적률
30% 미만	250% 이하
30~40% 미만	270% 이하
40~50% 미만	290% 이하
50~60% 미만	310% 이하
60~70% 미만	330% 이하
70~80% 미만	350% 이하
80~90% 미만	370% 이하
90% 이상	400% 이하

2. 산업복합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 가. 산업시설은 별표 17 제3호에 따른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그 밖에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로 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10퍼센트까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 나. 산업시설 외의 시설은 별표 12에 따라서 공동주택 등 준공업지역 내 허용되는 시설로 한다.

[별표 19]

권한위임 사무(제67조 관련)

사 무 명	관계법령
1. 다음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 (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공동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할 수 있음) 가. 용도지역 나. 용도지구 다. 도시계획시설(철도, 궤도 신설은 제외한다)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초조사 포함) 마. 다목 또는 라목의 입안에 대한 주민 제안서의 처리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여 입안하는 도시계획시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경우와 용도지구 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결정·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도로(폭 12미터 이하 또는 구도에 한정함) 나. 광장(폭 12미터 이하 도로 또는 구도에 접속되는 경우에 한정함) 다. 주차장(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정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라. 하천(소하천에 한정함) 마. 체육시설(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정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바. 공공공지(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정하되, 3천제곱미터 초과 공공공지의 면적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사. 공공청사(동주민센터,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에 한정함)	○ 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조례 제6조, 제7조 ○ 법 제29조·제30조 영 제23조·제25조

사 무 명	관계법령
아.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의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변경결정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에 한정함) 자. 문화시설(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정하되,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 차. 수도(저수용량이 5천톤 이하의 배수지 및 가압장에 한정함) 카. 전기공급설비(소형변전소 154Kv 미만 및 이와 관련되는 송배전시설에 한정함) 타. 가스공급설비(가스배관시설로 한정함) 파. 방수설비 하. 사회복지시설 거.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는 제외함) 너. 청소년수련시설(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정함) 더.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한정하되, 면적의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러. 시장(市場)(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정함)	
3. 다음의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가. 단위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결정(공원·녹지 및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을 제외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시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된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 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도로 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 라. 도시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 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결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	○ 법 제30조제5항 단서 영 제25조제3항

사 무 명	관계법령
측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결정 마. 가목과 나목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시가지· 특화경관지구의 변경결정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다만, 특 별계획구역과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 여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및 자목의 경우 2회 이상 나누어 변경하는 때에는 총 변경되는 합을 말한다.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 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나.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 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다. 획지면적의 변경(신설, 폐지를 포함한다.) 라.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층수변경은 제외한다) 마.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바.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등을 포함한다)의 변경 또는 신설, 폐지의 경우 사.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아.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 만, 해당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권자를 시장으로 지정한 경우는 제외 한다. 자.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 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다만, 용도지역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외 한다) 차.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친환경 에너지 상한 용적률에 한정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카.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 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신설, 폐지를 포함한다)과 그 위치변 경에 따른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변경 타.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파.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하.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거.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 법 제30조제5항 단 서 영 제25조제4항 조례 제19조

사 무 명	관계법령
너.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더.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러.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머. 공개공지, 보행전용도로, 보차혼용로 등 대지내 공지 위치 변경(신설, 폐지를 포함한다.) 버. 건축물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의 변경(다만,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는 제외한다) 서. 제2호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여 입안하는 도시계획시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경우와 제2호에 따라 사전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4의2.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범위에서의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무(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결정이 수반되거나 시장이 하는 건축허가, 시의 사업승인 대상과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제외)	○ 법 제30조, 영 제25조
5. 지형도면 등의 작성 및 고시에 관한 사무(다만, 시장이 결정 또는 변경결정한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제외한다)	○ 법 제32조·제63조 영 제27조·제60조
6.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실효고시에 관한 사무. 다만, 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 법 제48조, 제53조 영 제42조, 제50조
6의2.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지방의회 보고에 관한 사무(시장이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법 제48조, 영 제42조

사 무 명	관계법령
7.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에 대한 토지의 매수여부 결정, 매수결정 통지 및 매수절차 이행 등 매수청구 일체의 사무(구청장이 결정한 시설과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이 매수의무자인 도시계획시설에 한정한다)	○법 제47조, 영 제41조 조례 제10조, 제15조
8. 개발행위의 허가 및 준공과 관련한 다음의 사무(제28조제3항의 사무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다만, 개발행위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다. 토석의 채취 라. 토지분할 마. 물건을 쌓는 행위	○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영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영 제55조제3항제3의2 제외) ○영 제58조부터 제59조까지 ○조례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조례 제28조제3항 제외)
9. 법 제78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용적을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해당 용도 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에 관한 사무	○법 제78조제7항제2호
10.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무(시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할 수 있다)	○법 제63조, 영 제60조 조례 제32조
1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공고 및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의 검토(시장이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및 시행자 지정(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법 제85조, 영 제95조 ○법 제86조, 영 제96조

사 무 명	관계법령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통지한 시설과 공항은 제외한다) 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 및 고시, 실시계획을 위한 공람공고 및 그에 따른 공시송달 (시장이 시행하거나 시장이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과 공항은 제외한다) 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의 수리 및 준공검사, 준공검사필증교부, 공사완료공고(시장이 시행하거나 시장이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88조부터 제94조까지, 영 제97조부터 제101조까지 ○법 제98조, 영 제102조
12. 기초조사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등에 따른 타인의 토지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시장이 시행하거나 시장이 시행하는 자를 지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30조
1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	○법 제133조
14.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및 고시에 관한 사항(시 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수립 및 고시할 수 있음)	○법 제67조, 영 제67조
15. 사업부지 면적(기부채납 면적 포함)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가.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나. 용도지역 변경 또는 층수 완화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 시장이 처리해야 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구성체계 및 위계를 재구조화하며, 문구 등 용어의 표현을 재정비하고,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종전 부칙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신설하고자 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주문배송시설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하고자 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에도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전부개정조례

1) 조례 구성체계 재정비

- 장과 절의 명칭 변경 등 (제4장, 제8장)
- 위계에 맞게 조문의 체계와 순서를 변경 (제4조, 제8조, 제9조)
- 조문 번호 변경 (제5조, 제11조~제44조, 제48조, 제52조~제58조, 제64조~제68조)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별표로 이관 (제33조, 별표 2~15)
-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재배치 (제34조)
- 건폐율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 (제44조~제47조)
-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 (제48조~제51조)
- 조문의 순서에 따라 별표의 순서를 조정 (별표 16~19)

2)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청취 방법 변경 (제7조)
-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처리 중 불필요한 조항 삭제 (제19조)
-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지구에 대한 근거 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용어(재정비촉진지구) 수정 (제23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사항 반영 (제34조, 제35조, 제40조, 별표 4~6, 별표 8~12)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대상에 ‘통합공공임대주택’ 추가 (제51조)
- 분과위원회 구성 근거 추가 및 구성 인원수 변경 (제56조)

-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명칭 변경 및 인원제한 폐지 등 (제64조)
- 노인복지주택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수정 (별표 2)
- 3) 불명확한 문구 등 용어·표현 등 재정비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세분 명칭 변경 (제9조, 제40조)
 - 한자 표기 및 근거 법령 등 오기 정정 (제34조, 제40조)
 - 유사문구 등 표현 방식 통일 및 반복되는 불필요한 문구 삭제 (별표 2~15)
 - 시장 결정 권한의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을 자치구에 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과 함께 결정할 경우 서울시 일괄결정의 근거 및 권한위임사무 명확화 (별표19)
- 4) 종전 부칙 실효 등에 따른 개정 조례 부칙 신설 (부칙 제1조~제14조)
 -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별표 5제3호가목18)
 -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익성 달성 시까지 존치 기간 연장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함 (제26조제2항제1호)
 -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용도의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분양 시점에 입주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설치되어지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1회 연장(기간 연장 시 최장 6년)을 하고자 함 (제26조제2항제2호)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용적률 규정 신설 (제49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352호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로 한다.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연장, 정지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포함하여 15명 이내로”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된다”를 “맡는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 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5호) 가목 중 “안전관리요원”을 “시험운전자”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한정운수면허”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로 한다.

1. 규칙 제7조에 따른 여객운송계획서, 보험의 가입증서,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제11조제2항 중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그 발급과 연계하여”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시”로, “30일 이내의 시범운행기간을 포함하여 60일”을 “60일(30일 이내의 시범운행기간 포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9조제3항, 영 제8조제3항”을 “법 제9조와 영 제8조”로, “한정운수면허의 기간”을 “기간”으로, “정하여”를 “정하여 유상운송을 허가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유상운송을 허가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운수면허”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로, “운행노선·시간·요금 등 시장에게”를 “운행지역·노선·시간·요금 등 이미”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허가 기간 또는 면허 기간 연장 등) ① 제11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2. 그 밖에 시장이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 ③ 시장은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을 “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또는 법 제17조 등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관련 지원 업무
2.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관련 안전운행 검증 기준 마련 지원 업무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실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	--

연장 기간	
----------	--

필요성 및 사유	
-------------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의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영 실적 및 성과 등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검토 서울특별시	→	확인 및 협의 서울특별시	→	의사 결정 서울특별시	→	허가 서울특별시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개정에 따라 유상운송의 허가권이 국토부장관에서 시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유상운송허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업무위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운송의 신청 및 허가절차, 허가를 받은 이후 사업계획변경, 허가기간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위 법령 인용 문구를 정비함(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 평가 등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위탁 규정 신설(제21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353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시 장년층” 을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으로 한다.

제2조 중 “장년층” 을 각각 “중장년층” 으로 하고, “50” 을 “40” 으로 한다.

제5조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4조제1항 중 “장년층” 을 각각 “중장년층” 으로 한다.

제6조 중 “구체적” 을 “구체적인” 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득이 한” 을 “부득이한” 으로 한다.

제12조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시” 를 “서울특별시” 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시의회” 를 “서울특별시의회” 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재단은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를 “서울특별시”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해당 조례에도 이를 위한 내용을 추가함.
- 서울런 4050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인생이모작 지원 대상의 확대에 따른 변경 사항을 현행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16조의2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추가함.
- 나.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변경하고,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변경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354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고등교육법」 제6조”를 “법 제6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9. 교육혁신원

제7조의2 중 “인권센터 및 미래혁신원을”을 “인권센터를”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대학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시립대 조직 일부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관 폐지 및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신설(제7조제1항제5호)

－ 기존 사회복지관 업무를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에서 수행

나. 국제교육원 폐지(제7조제1항제9호 삭제) 후 국제처 신설

－ 부속기관인 국제교육원을 대학본부 산하 하부조직인 국제처로 확대개편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사항 : 국제처

다. 교육혁신원 신설(제7조제1항제9호)

－ 기존 자유융합대학, 미래혁신원에서 수행하던 교양교육, 글로벌외국어교육, 교수학습 개발 관련 업무 전담부서 신설

라. 미래혁신원(제7조의2) 폐지 후 관련 업무 기획처로 이관

－ 대학의 기획·평가·대학혁신·성과관리 기능 일원화로 대학발전을 위한 기획조정 역할 강화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사항 : 기획처

◆ 서울특별시조례 제9355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 지방정부’란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외국의 지방정부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국제개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제7조(기금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 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글로벌도시정책관

2. 분임기금운용관: 국제협력담당관
 3. 기금출납원: 기금 관리업무 담당사무관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금 소관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가.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와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의 임직원
 - 나.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임기금운용관이 맡는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두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하나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시의회의 기금 심의 등에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바, 조례를 계정별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외협력기금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 (기존)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변경)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대외협력기금 국내·국제협력계정 분리로 인한 기금 명칭 변경

- (기존)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 (변경) 국제개발협력기금

다.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신규 조례 신설로 인해 기존 대외협력기금 조례에서 국내협력계정 내용 삭제

- 목적(제1조) :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문구 삭제
-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지방정부의 범위(제2조) :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범위 삭제, 외국지방정부의 범위 → 정의 변경
- 기금의 용도(제6조) : 국내협력계정의 용도 삭제
- 기금관리(제7조) :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삭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8조) :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삭제

라.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국제협력계정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변경

- 기금관리(제7조) : 기금운용관(경제정책실장 → 글로벌도시정책관) 변경 및 분임기금운용관(국제협력과장 → 국제협력담당관) 변경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구분

- 위원회의 구성(제9조) :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소관국장을 명시

바. 국내·국제협력계정 조례 분리로 인한 ‘계정별’ 문구 삭제(제5조~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356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서울 관광발전을” 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 을 “2029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를 “시” 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용도는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에 필요한 관련 비용 등으로 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 를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시” 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된다” 를 “맡는다” 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해축을 희망하는” 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을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로, “아니하다고” 를 “않다고”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3분의 1이상” 을 “3분의 1 이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밖의” 를 “밖에” 로 한다.

③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외부변수의 위험이 상존하는 관광업계를 즉각 지원하고 향후 서울관광의 허브 기능을 할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비용을 적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
-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을 위해 별도의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할 예정임에 따라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용도에서 건물 매입 비용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 에서 “2029년 12월 31일” 로 연장함(제3조)
- 나.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용도에서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매입 비용을 삭제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357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장년층” 을 “중장년층”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 “장년층(長年層)” 이란 50세” 를 “ “중장년층” 이란 40세”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장년층” 을 “중장년층” 으로 한다.

제3조 중 “장년층” 을 “중장년층”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년층” 을 “중장년층”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년층 이외로 할” 을 “중장년층이 아닌 사람도
제1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6조의2 제1호 및 제2호 중 “장년층” 을 각각 “중장년층” 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제5호 중 “장년층” 을 “중장년층” 으로, “시가” 를 “서울특별시가” 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장년층” 을 “중장년층” 으로 한다.

제8조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지원 할” 을 “지원할” 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장년층” 을 각각 “중장년층”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2길7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도봉구 마들로 13길84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런 4050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인생이모작 지원 대상의 확대 및 시립도심권50플러스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변경 사항을 현행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년층” 을 “중장년층” 으로 변경하고, “50세 이상 65세 미만” 을 “40세 이상 65세 미만” 으로 변경함

나. [별표 1]의 50플러스센터 관련 내용을 삭제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358호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규정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제7조(기금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 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대외협력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관리업무 담당사무관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금 소관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지방자치, 지역 간 상생 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의 임직원

나. 지방자치, 지역 간 상생 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임기금운용관이 맡는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대외협력기금 국내 및 국제협력계정의 분리와 국내협력계정의 명칭 변경 등을 위해 별도의 근거조례로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제1조)
- 나. 기금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제2조)
- 다.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제4조)
- 라.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제5~6조)
- 마.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제7조)
- 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8~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359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시(자치구 포함),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정함으로써 가설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안전 위험요인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1회로 함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 제105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 2,145명” 을 “총 2,115명”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직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명)

부 서 별	계	일반 종사원	환경 정비원	도로 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 청소원	시설 경비원	대민 종사원
					계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통신	기타			
총 계	2,115	323	515	81	440	233	144	8	16	11	28	421	219	116
본 청	270	108	15	0	64	26	27	0	6	0	5	76	6	1
민방위담당관	3				2	1	1					1		
빅데이터담당관	4	4												
정보공개담당관	8	8												
소방행정과	20				6	3	3					7	6	1
일자리정책과	22	22												
복지정책과	3	3												
안심돌봄복지과	1	1												
어르신복지과	1	1												
택시정책과	1	1												
물류정책과	1	1												
문화재관리과	11	2	9											
보건의료정책과	1	1												
감염병관리과	3	3												
총무과	169	55			54	22	23		4		5	60		
주택정책과	2	2												
건축기획과	2	2												
광화문광장사업과	10				2				2			8	0	
동물보호과	8	2	6											
직속기관	307	62	2	0	120	94	19	0	2	2	3	98	25	0
서울시립대학교	108	22			21	10	8		2		1	44	21	
보건환경연구원	24	8			10	4	4			2		6		
인재개발원	6											6		
농업기술센터	9	7			2						2	0		
서울종합방재센터	1											1		

부 서 별	계	일반 종사원	환경 정비원	도로 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 청소원	시설 경비원	대민 종사원
					계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통신	기타			
119특수구조단	<u>0</u>											<u>0</u>		
소방서	<u>124</u>	25			75	75						<u>24</u>		
소방학교	<u>21</u>		2		6	3	3					<u>9</u>	4	
시민안전체험관	<u>14</u>				6	2	4					<u>8</u>		
사업소	<u>1,531</u>	153	<u>498</u>	81	<u>256</u>	<u>113</u>	<u>98</u>	8	8	9	<u>20</u>	<u>240</u>	<u>188</u>	115
서울아리수본부	<u>128</u>	9	6		<u>53</u>	21	21				<u>11</u>	<u>47</u>	9	4
미래한강본부	<u>142</u>		76		6	1	1		1	1	2	<u>52</u>	<u>2</u>	<u>6</u>
데이터센터	8				3	3						3	2	
시립어린이병원	<u>38</u>	7			9	4	5					<u>8</u>	3	11
시립서북병원	62	7			12	5	6		1			9	9	25
시립은평병원	24	2			8	4	4					7	5	2
서울역사박물관	<u>118</u>	37			28	14	14					<u>21</u>	<u>32</u>	
한성백제박물관	<u>80</u>	41			14	4	4		1	1	4	8	<u>17</u>	
서울시립미술관	<u>44</u>	3			<u>13</u>	<u>8</u>	5					<u>16</u>	<u>8</u>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u>66</u>		44											<u>22</u>
서울도서관	3	3												
서울역사편찬원	<u>5</u>	<u>4</u>										1		
품질시험소	<u>2</u>											<u>1</u>	1	
동부도로사업소	26		1	14	8	4	4					1	2	
서부도로사업소	18		1	14								1	1	1
남부도로사업소	20		1	13								2	3	1
북부도로사업소	20		1	14								2	1	2
성동도로사업소	17		1	13								2	1	
강서도로사업소	17		1	13								2		1
중랑물재생센터	10		3		3	2		1				<u>2</u>	<u>2</u>	
난지물재생센터	7		4		1			1				1		1
서울대공원	<u>180</u>	<u>5</u>	57		<u>66</u>	29	<u>19</u>	6	5	6	1	<u>17</u>	<u>9</u>	26
동부공원여가센터	<u>74</u>	2	58									6	<u>6</u>	2
중부공원여가센터	<u>110</u>	1	87		3	1	2						<u>19</u>	

부 서 별	계	일반 종사원	환경 정비원	도로 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 청소원	시설 경비원	대민 종사원
					계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통신	기타			
서부공원여가센터	<u>132</u>		93		2						2	4	<u>27</u>	6
북부공원여가센터	<u>44</u>		26		2	1	1						<u>16</u>	
서울시립과학관	47	26			6	3	3					8	6	1
서울식물원	<u>67</u>	4	<u>38</u>		11	5	5			1		<u>8</u>	<u>6</u>	
서울기록원	2	2												
아동복지센터	5				2	1	1					2	1	
차량정비센터	1											1		
공무원수련원	<u>14</u>				6	3	3					<u>8</u>		
의회사무처	<u>7</u>	0	0	0	0	0	0	0	0	0	0	<u>7</u>	0	0
의회사무처	<u>7</u>											<u>7</u>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기관(부서)별 공무원 정원조정 검토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관(부서)별 정원조정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총 정원을 2,145명에서 2,115명으로 30명 감원 조정(제4조 및 별표)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